

貿易과 環境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우리 產業의 對應方向

김 열
〈商工資源部 産業環境課長〉

- ◇…… 筆者註 : 이 글은 최근 OECD, GATT, UNCTAD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개별국가에서 ……◇
- ◇……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 ……◇
- ◇…… 였으나, '무역과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얻고 있는 내용은 선언적인 사항 이 ……◇
- ◇…… 외에는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한 향후 전망은 어디까지나 여러 전망중 ……◇
- ◇…… 의 하나라는 점을 밝혀둔다. ……◇

I. 環境과 우리산업 및 貿易과의 關係

대부분의 산업활동 특히 제조업은 많은 적든 환경을 오염시키기 마련이다. 공장굴뚝의 매연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공장폐수는 수질을 오염시킨다. 또한 산업활동에 널리 이용되는 연화불화탄소는 성층권내의 오존층을 파괴시키는가 하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산성비와 지구온난화라는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 온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전키 위해서는 환경처가 대기, 수질 등에 관해 설정하는 환경규제기준을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하며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들간에 적용되는 국제환경기준을 세계의 모든 산업체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환경규제기준을 준수키 위해 환경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곧 기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인식되어 이 분야의 투자는 가급적 줄이기를 희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우리산업의 환경인식은 국내외적으

로 다음 두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달러를 넘어서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해져서 환경오염행위가 점차 질책을 받게 되고 환경친화적 제품(green-products)은 그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를 구매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훼손을 다소 감수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오염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環境自淨能力(pollution assimilative capacities)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도전은 '92.6월의 리우회담(Rio Summit) 이후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까지도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활동도 규제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지구환경오염물질의 사용규제는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생산공정의 규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중이다. 물론 이런 논의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품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우리산업은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① 국제적으로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는 어떤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는가 ② 지금까지의 환경과 무역에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는 어떤 수준에 있으며 그 주요안건은 무엇인가 ③ WTO에 설치될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④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우리 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環境과 貿易間의 국제적 連繫實態

1. 多者間環境協定에서의 連繫

현재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연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이다. 1933년 동식물 보호협약에서부터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다자간환경협정의 수는 150여개나 되나 이중 무역관련조항(Trade provisions)을 가진 협정의 수는 불과 17개이다(〈표-1〉 참조). 이들 무역관련조항은 협약상의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제품들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금지, 별도 수출입절차의 준수, 협약 비회원국가와의 수출입금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150여 다자간환경협정중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정의 수는 대기, 해양, 자연환경, 핵분야 등에서 27개가 되지만 우리산업 전반에 관련이 많은 협정은 3개(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이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킴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個別國의 一方的 措置로서의 連繫

GATT 규범에는 환경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개별국에서 취하는 무차별적인 환

경정책(Non-discriminatory environmental)은 GATT 규범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즉 건강이나 안전 또는 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의적이거나 위장된 것이 아닌 한 GATT 제반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으며(GATT 규범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규정) 건강이나 안전 또는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상의 국제표준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UR, TBT 및 SPS에서는 환경에 관한 표준설정 등에까지도 언급하고 있음).

이와같은 GATT 규범에 따라 개별국가는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조치와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를 다양하게 취해오고 있다.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조치의 예로는 오염 유발제품에 대한 판매세의 부과(Charge and taxes),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세제우대, 공해 저감을 위한 국내 소비패턴 형성을 위한 각종 조치(표준화, 포장, 라벨링, 재활용 등)를 들 수 있으며,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치포획방법을 이유로 한 미국의 참치 및 관련제품의 수입금지조치(GATT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포획방법을 이유로 한 금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 '91년)나 태국의 국민건강을 이유로 한 외국산담배의 수입금지조치(GATT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외국산담배와 국산담배의 차별조치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정, '90년) 등이 있다.

III. 貿易과 環境連繫를 위한 국제적 論議水準

최근에 와서 기존의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국제규범만으로써는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지구 환경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OECD, GATT, UNCTAD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이 논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강국들의 입장을 OECD가 대변하고 있고 여기에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입장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은 UNCTAD 및 UNEP이다.

1. 美國의 見解

미국에서는 환경보호단체, 환경문제와 결부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 그리고 이를 대변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상원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대해 강한 주장을 펴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자간 환경협정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Unilateral trade restrictions)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다.

現 클린턴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음 4가지를 설정하고 있다(미 국무성에서 '94. 3월 상원에 보고한 내용).

- ① 다자간환경협정이 요구하는 경우.
- ② 타국의 행위로 미국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경영향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③ 야생동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과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 ④ 기존 국제환경기준의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판단될 경우 등이다.

또 이러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環境相計關稅(Environmental counter-vailing duties)

환경상계관세는 많은 환경보호론자, 환경법률전문가 및 일부 상원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의 기업들은 환경기준이 엄격한 나라의 기업에 비하여 그들의 수출상품에 대해 사실상의 보조금(Implicit subsidy)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상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몇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그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환경상계관세는 2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GATT 규범에서 제품의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관세는 인정하나 제조방법을 근거로 한 차별관세는 인정치 않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환경상계관세는 환경 및 개발상황이 각 국가마다

다 상이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2) "Green 301"

환경표준(Environmental standards)이 수출자에게 불공평한 교역상의 이익을 주는 나라를 불공정 교역국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현행 'Super 301'에 환경관련조항이 삽입된 개념으로 개도국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내에서는 이를 입법화하여 개도국의 환경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매우 거센 실정이다.

(3) Green GSP 프로그램

개도국의 환경표준(Environmental standards)을 높이기 위해 GSP 공여와 환경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2. 先進國 · 開途國의 立場調律

미국의 견해가 일방적 무역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OECD, GATT 및 UNCTAD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다자간의 협정을 통하여 실현시키려는 입장이다. 이 논의의 주요핵심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그리고 처리에 이르는 각 단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무역조치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통하여 국제적 이동대상이 되는 상품에 있어서 그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을 어떻게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느냐, 환경비용을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무역조치는 어떠한 것인가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외부비경제 또는 환경비용이 최종제품의 소비에서 발생하느냐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제품 및 제조공정의 표준화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最終製品의 消費에서 環境費用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국가가 아닌 수입하여 사용하는 국가에서 환경영향이 발생하며 개별국가의 일방적 표준 설정 및 적용에 따른 교역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제품과 관련된 환경기준이 높은 나라가 수입제품에 대해 자국의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자국제품을 수입제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을 어렵게 하여 비관세장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설정이 필요하나 개발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국제표준과 다른 표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製品의 製造 및 工程過程에서 環境費用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며 당해국가는 물론 인근국가 심지어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① 당해 1국가에만 환경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이 제품의 교역을 통해 국가간에 이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도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환경영향이 없고 오직 제조과정에서 당해국가의 환경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오염유발산업(pollution intensive industries)을 포함, 대부분의 제조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개별국가가 자국의 환경표준을 높이면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국의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환경표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환경기준이 높은 자국의 상품에 비해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여 환경상계관세의 부과 등 무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현행 GATT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의 반발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조방법의 국제적 표준화를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표준이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환경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표준을 인정함과 아울러 표준이행의 강제성이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reen-GSP, Ecolabelling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소환경표준(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s)제도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현재 개발 중인 가치 'ISO 14000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국가간 또는 지구적으로 환경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이 국가간 또는 지구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산성비(SO₂ 배출물질의 이용), 오존층파괴(CFC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기후변화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최종제품의 특성과는 관련없이 제품의 제조 공정과 관련되며 개별국가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가 없는 한 제조공정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환경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서 국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환경표준이 설정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무역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비가입국가와의 규제대상 사용물질의 교역금지를 규정).

다자간환경협정에서 규정될 이러한 성격의 무역조치는 현행 GATT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GATT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IV.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活動展望

1. 마라케쉬 결정

'94. 4. 15 마라케쉬 UR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이 채택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에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작업의 기본방향은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의 관계를 설정하되 ① 무역과 환경조치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 ② 보호무역조치의 회피(Agenda 21

및 리우선언의 환경목적 반영) ③ 무역·환경조치의 감시 및 이들 조치를 규율하는 다자규범의 효과적 실행의 감시 등에 관한 다자무역체계조항의 수정여부에 대해 검토·권고하는 것 등 3개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초기작업범위를 ① 다자무역체계조항과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다자환경협정상의 조치 포함)와의 관계 ② 다자무역체계조항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환경조치(환경정책 포함)와의 관계 ③ 다자무역체계조항과 환경목적을 위한 부과금 또는 조세와의 관계 및 다자무역체계조항과 환경목적을 위한 표준, 기술규정, 포장, 라벨링, 재활용 등 제품요구사항과의 관계 ④ 무역조치와 환경조치(제품요구사항 포함)의 투명성에 대한 다자무역체계조항 ⑤ 다자무역체계의 분쟁해결절차와 다자환경협정상 체계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⑥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과 관련하여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⑦ 국내금지상품의 수출문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 이러한 일을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의 활동을 통해 추진하며 CTE 공식발족 이전에는 WTO준비위원회 분과위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CTE 및 WTO 준비위의 분과위 활동에는 모든 회원국가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2. 마라케쉬 결정 이후의 동향

마라케쉬 결정이 있고 난 후의 WTO와 관련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TO準備委 第1次 會議

'94. 4. 29 서덜랜드 WTO준비위원회 의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 내에 행정예산분과위, 서비스분과위, 무역환경분과위 그리고 제도·절차 및 법률문제에 관한 분과위 등 4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WTO준비위는 가능한 한 분과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무역환경분과위의 장으로는 Lamprea 브라질대사를 선임하였다.

(2) 貿易環境分科委 第1次 會議

'94. 5. 12의장의 주재로 개최되었는데 제반 준비

작업이 끝나는 9월중순경부터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3. 活動展望

마라케쉬 결정에는 세계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형태로 지속시키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이 WTO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선진국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즉 무역환경위원회의 작업범위가 무역조치와 환경조치에서부터 분쟁해결절차와 개도국의 시장접근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작업일정도 WTO 준비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분과위에서 추진토록 한 점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다양성때문에 이에 관한 규범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다자무역체계에 포함시키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무역일반에 관한 다자규범인 GATT와는 또다른 규범으로서의 다자환경규범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활동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기 위한 다자무역체계의 조항수정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 작업을 통하여 환경영향이 제품소비에 있지 않고 제조공정 및 과정에서 발생하며, 발생되는 환경영향이 당해국가에만 국한되는 제품의 공정 및 제조방법에 대해 타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V. 우리산업의 對應方向 및 政府의 役割

정부는 업계와 정부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환경논의에 대한 우리산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94. 4. 21 상공자원부에 'GR 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대책반은 우선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참가에 필요한 우리산업의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무역조치, 환

경조치, 분쟁 해결절차 및 무역규제제거의 4개분야로 나누어 무역협회, 전경련, 무역진흥공사, 경영자총협회,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공진청 및 상공부 등 10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올 6월말까지는 WTO/CTE 참가기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또 이 대책반은 국제환경규제를 많이 받게 될 업종을 중심으로 국제환경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UNEP의 IE/PAC (Industry and Environment Program Activity Center) 와 접촉중이다.

국제적인 환경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이 자발적이고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되 특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방이 국제추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후변화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CO₂ 등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기본의무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 사업 및 에너지수급구조를 온실가스저감의 방향으로 개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1차에너지 총소비의 약 28%를 이용하는 發電産業이 발전량의 확대 지향성을 탈피하여 전력회사가 직접 소비자의 전기소비량을 줄이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요금 구조개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전력회사에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의 21% 수준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배출형 에너지소비를 감축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솔린 및 디젤대체 차량의 개발·보급에 정부가 초기단계에서 수요자가 되어주는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환경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관리실태 및 대응수요를 조사하여 환경설비산업의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환경·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 및 설비가 개발·국산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은 자발적·능동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정보부족 등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의 환경대응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소비활동에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 및 환경에 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협의·설정된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수출활동에 영향을 받게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전개될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환경상계관세나 Green 301에 의하면 낙동강 폐놀유출사건 등 근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활동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산업은 환경투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함과 아울러 국제적 논의수준을 파악하여 환경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국제논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가급적 환경에 따른 우리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장(개도국으로 잔류하여 보다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등)을 취할 것이나 꼭 우리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국제논의상의 우리나라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무역과 환경의 국제적 논의의 최종목표는 최종제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과정과 소비 및 처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표준(Standard)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의 국제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는 모르나 이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는 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부나 특정 연구기관이 전담하여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표-1>

다자간환경협정상의 무역관련 조항

협약명	체결목적	무역관련규정
1. 자연상태의 동식물서식군 보존에 관한 협약(1933)	자연동식물 서식군을 수렴·포획으로부터 보존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렴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못함(제9조).
2. 서반구의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협약(1940)	미주지역 천연동식물 보호, 자연경관·지형 등의 보존	수출허가를 통한 보호대상물의 교역규제(제9조)
3. 국제조류보호 협약(1950)	조류의 숫자 유지 및 보호 특히 철새의 멸종방지	보호계절, 산란기간중의 조류에 대한 수출입 금지(제3조)
4.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협약(1968)	아프리카대륙의 토양, 수자원, 동물서식지 등의 보존·이용·개발	모든 동식물에 대한 견본이나 포획물의 운반·교역 규제, 불법적 포획·살상 방지(제9조)
5. 수렴 및 조류보호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1973)	수렴 및 조류보호에 대한 국가간규정 조화	포획물·조류의 수출입은 발생국 규정에 의한 규제(제6조, 제9조)
6.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1973)	과도한 국제교역으로 인한 남획방지 및 멸종위기의 종 보호	관련 체약국의 과학당국의 승인하에 수출입 가능(제3조, 제9조)
7. 북극곰 보호협정(1973)	북극곰의 포획·살상방지, 곰 서식지 보호	불법적 수출입 금지(제5조)
8. 비큐나 보존, 관리에 관한 협약(1980)	비큐나의 보호, 관리	비큐나의 생식물질 수출 금지(제4조)
9. 북태평양서식 바다물개 보존에 관한 협약(1957)	바다물개의 최대한의 생식성 유지	연구목적 이외의 물개표피의 교역 금지(제8조)
10.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감소, 금지	비체약국으로의 기술이전 금지, 규제대상물질 수출입 금지, 1993. 1. 1부터 CFC를 포함한 제품수입 금지
11. 국제적 운송중의 동물보호에 관한 유럽협약(1968)	운송중인 동물의 고통 저감	국제적 운송시 규제규정 적용
12. 국제식물보호협정(1951)	식물전염병 통제, 국제적 이동시 국제협력 증진 및 강화	금지, 검사, 발송물 파기등을 통한 수출입 엄격 규제(제6조)
13. 동남아 및 태평양연안의 식물보호협정(1956)	질병, 병충해 유입 방지	국제식물보호협정에서 파생, 관련조치의 활용에 노력(제3조)
14. 아프리카 식물검역협약(1967)	질병, 병충해 유입 방지	국제식물보호협정에서 파생
15. 식물검역 및 병해충, 질병으로부터의 식물보호에 관한 협정(1959)		식물원종자의 발송·수출입·운반에 통일적인 식물검역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협력
16.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ASEAN 협정(1985)	ASEAN지역의 천연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증진방안 강구	멸종위기에 있다고 인식되는 종의 보전과 그 교역을 규제
17. 유해폐기물과 그 처리의 국경간 이동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	위험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규제, 통보 및 동의절차 마련, 불법적 교역과 당사국책임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비체약국과의 교역 금지(제4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해 통보, 수입국 동의후 수출 가능(제6조), 상기사항 위반시 재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제8조)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표-2>

구 분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규제대상물질	CFC, Halon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총 95개) - 의정서 가입국가간에는 규제대상물질의 수출입 허용 - 가입국-비가입국간의 수출입 금지	유해폐기물(일반가정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포함)
수출입규제방법	가입국에 대해 규제물질의 사용금지일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입금지조치를 통해 비가입국의 수를 축소시켜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	유해폐기물의 수출자는 수입국의 정부로부터 수입동의을 받아야 하며 협약상에 정해진 이동절차를 준수해야 함.

우리 산업이 이러한 논의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종별 국제논의(현재 UNEP, ISO 등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예정)에 있어 피상적·수동적으로 이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국제논의 자체에 깊숙이 참여하여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참여주체도 정부 및 연구기관뿐만이 아닌 업종별 이해관계자들까지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논의에 우리 산업계에서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정보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입수하여 관련업계에 전달하고 업계는 국제논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주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 체계의 작동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업계가 스스로 앞날을 전망하고 산업활동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 또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OECD Secretariat, *Interim Conceptual Framework for PPM*

Measures, Prepared for The OECD Conference on Trade and Environment : PPM Issues, Helsinki, April 6-7, 1994 (이하 OECD Conference, 1994. 4)

2. G. J Hewison (New Zealand), *Issues and the Case of Drifnet fishing*, OECD Conference, 1994. 4

3. R. V. Slooten (UNEP) *The Case of PPMs and the Montreal Protocol*, OECD Conference, 1994. 4

4. R. Stewardson (Belgium), *Climate Change, Carbon Taxes and Border Tax Adjustments*, OECD Conference, 1994. 4

5. J. Chakarian (GATT), *Historical and Current Perspective of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OECD Conference, 1994. 4

6. K. Kummer (UNEP), *The 1989 Basel Convention and its Relevance for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OECD Conference, 1994. 4

7. R. Vossenaar and V. Jha (UNCTAD), *Environmentally Bas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Standards :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Conference, 1994. 4

8. 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 Use of Trade Measure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1993. 12

9. *Report of Seminar on Trade and Environment*, EU-EFTA Seminar, 1994. 2

10. GATT, *International Trade and Invinment*, 1992. 4 ▲